

## 제 20 장 분쟁해결

### 제 20.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 제 20.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정부조달)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 제 20.3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지정된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된다.

### 제 20.4 조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1. 이 장의 분쟁해결 규정의 이용은, 분쟁해결 조치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특정한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이 이 협정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중 어느 한쪽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이 두 협정 중 어느 한쪽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첫 번째 포럼이 절차적 또는 관할권상의 이유로 그 주장에 대하여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른 쪽 포럼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제2항과 제3항의 목적상,

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사국의 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이하 "분쟁해결기구"라 한다)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 16조 및 제17.14조에 따라, 각 경우에 맞게,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나.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제20.8조에 따라 당사국의 분쟁해결패널 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패널이 제20.11조에 따라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제 20.5 조 해석 규칙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반영된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해석한다. 이 협정상 의무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의무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패널은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서 수립된 관련 해석과 합치하는 해석을 채택한다. 패널의 판정은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 제 20.6 조 협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0.2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 요청의 사유 및 그 밖의 모든 쟁점을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한다.

2. 각 당사국은

-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제 20.7 조  
공동위원회 회부**

- 1. 양 당사국이 제20.6조에 따른 협의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2.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고,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 20.8 조  
패널의 설치**

- 1. 제20.7조에 기술된 통보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이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에 포함된 요청의 사유를 명시한다.
- 2. 제1항에 규정된 대로,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부터 5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 선택 절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 당사국이 사안을 회부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부터 15일 이내에 패널 선택 절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가호와 나호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고자 함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가 이루어지면, 패널은 가호와 나호에 따라 구성된다.
  - 가. 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민일 수 있는 1명의 패널위원을 임명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패널 의장인 세 번째 패널위원의 임명을 위한 3명의 후보명부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그 후 후보명부를 검토하여 세 번째 패널위원 임명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 그리고
  - 나. 모든 패널위원이 제1항에 규정된 대로,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부터 45일 이내에 임명되지 못한 경우, 남아 있는 패널위원 중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의장 또는 정규 위원으로의 임명을 위한 후보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 패널위원은 원래의 패널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패널의 업무는 후임 패널위원의 임명 동안 중단된다.
4. 패널의 설치일은 제2항에 따라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이다.
5. 이 조에 따라 패널에 임명된 개인은
  -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라. 어떠한 자격으로도 사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 마. 양 당사국에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관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의혹을 초래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그리고
  - 바. 부속서 20-가에 명시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의장은 어느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이다.
7.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항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되는 경우, 그 재소집된 패널은 가능한 경우 원래의 패널과 같은 패널위원을 가진다. 기존 패널위원으로 모든 패널이 재소집될 수 없는 경우, 제2항부터 제6항에 명시된 패널 선택 절차를 적용한다.

### 제 20.9 조 패널의 기능

1. 패널은 다음의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 가. 사건의 사실관계
  - 나.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 다. 다음의 여부
    -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 2)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2.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 "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20.11조제1항 및 제20.11조제2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판정 및 적용가능한 경우 권고를 하며, 제20.11조제1항 및 제20.11조제4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3. 이 조는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20.10 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3항을 조건으로, 패널은 부속서 20-나에 규정된 모범 절차규칙을 따른다.
2. 패널은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모범 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3.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장 또는 모범 절차규칙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패널의 자체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 제 20.11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이 협정 규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 가. 다음의 여부

-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 2)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 나.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사결과와 판정에 대한 사유

2.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그 절차 규칙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나 기술적 자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양 당사국의 공동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5. 제1항, 제3항, 그리고 제4항은 제20.13조제4항, 제20.14조제5항, 제20.14조제6항, 또는 제20.15조제1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20.12 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패널은 재개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상호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양 당사국은 패널절차를 종료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3.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양 당사국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 제 20.13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거나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상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판정을 포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게 할 의무가 있다. 또는

나.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판정을 포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거나 제소 당사국과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 다음을 통보한다.

- 가. 이행에 관한 목적상, 제1항을 준수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 나. 그 이행이 신속히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 다. 그러한 이행이 즉시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소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기간

3. 합리적인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한다.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정을 패널에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요청은 최종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4. 제3항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에게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정, 그리고 그러한 판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 보고서를 그 요청일부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한다. 이러한 판정을 내리기 전에, 패널은 양 당사국으로부터 서면통보를 구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과 회의를 소집하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지침으로는, 패널이 판정한 합리적인 기간은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합리적인 기간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짧거나 길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1.3조다호상의 중재에 적용된 원칙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 제 20.14 조 불이행

1. 다음의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 가. 제20.13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또는
- 나.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에 제20.13조제1항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자 함을 통보하였을 때

2. 양 당사국이

- 가.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 나. 보상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

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5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정지할 권리는 제20.15조에 따라 수행되는 이행 검토 절차 중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 또는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나 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5.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 중 하나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가호와 나호 모두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는 12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6. 혜택을 정지할 권리가 이 조에 따라 행사된 경우,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혜택의 수준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면, 피소 당사국은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되는 경우, 제5항의 기간이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혜택의 수준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7.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 제 20.15 조 이행 검토

1. 제20.14조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20.14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3. 이 조에 따라 또는 제20.14조제5항나호와 관련하여 재소집된 패널은 다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 가. 제20.13조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소 당사국이 취한 모든 조치의 사실관계, 그리고
  - 나. 피소 당사국이 제20.13조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이 조에 따라, 또는 제20.14조제5항나호와 관련하여 재소집된 패널은 다음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 가. 사건의 사실관계, 그리고
  - 나. 피소 당사국이 제20.13조제1항 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제 20.16 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소권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 제 20.17 조 비용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패널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 제 20.18 조 기간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 부속서 20-가 행동규범

### 절차에 대한 책임

1.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절차의 완전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패널위원들은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한다.

### 공개 의무

2.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3. 일단 선정되면, 패널위원은 제2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이해, 관계 및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 패널위원의 임무 수행

4. 패널위원은 이 장의 규정 및 적용 가능한 절차 규칙을 준수한다.

5.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6. 패널위원은 절차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다른 패널위원의 참여기회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7.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8. 패널위원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18항, 제19항 및 제20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패널위원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10.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항을, 패널위원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양 당사국 모두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달하지 아니한다.

###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11.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 패널위원은 공정하게 행동하고, 부정 또는 편향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2. 패널위원은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3.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특정한 지위에서 패널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상을 야기하는 행위를 회피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한다.
15. 패널위원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6. 패널위원은 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 *특정 상황에서의 임무*

17.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그 패널위원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 *비밀의 유지*

18.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9. 패널위원은 공표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0.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의

### 2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인**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위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0.8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란 패널위원에 관해서는, 보조인 외에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부속서 20-나 모범 절차규칙

1. 이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대한 언급은 이 장 내 적절한 조에 대한 언급이다.

### 일정표

2. 양 당사국과 협의 후, 패널은 패널의 설치 후 10일 이내에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패널절차를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이 규칙에 첨부된 일정표는 지침대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패널절차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패널 설치일부터 최종 보고서의 마감일까지 27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패널절차의 일정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패널은 양 당사국이 각각의 입장을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패널은 양 당사국의 서면 입장제출을 위하여 정확한 기한을 정한다.
4. 패널절차에 적용가능한 모든 기간은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날부터 후임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 패널의 운영

5. 패널 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및 그 밖의 모든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어떻게든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요구될 수 있는 수만큼의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사, 또는 지정된 기록원을 보유할 수 있고 그들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패널에 의하여 수립된 모든 협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
8. 패널의 심의는 기밀이다. 패널위원 및 패널이 보유한 사람은 패널절차 및 심의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9.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이 협정과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0. 패널이 고려중인 사안에 관하여 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아니한다.

### 서면 입장 및 그 밖의 문서

11. 각 당사국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주장을 기술하는 첫 번째 서면 입장을 패널 및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패널의 설치일 후 14일 이내에, 각 패널위원 및 피소 당사국에게 첫 번째

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첫 번째 입장 접수일 후 21일 이내에, 각 패널위원 및 제소 당사국에게 첫 번째 입장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첫 번째 입장 제출 후 서면 반박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12. 당사국은 질문에 대한 반박이나 답변의 목적상 필요한 증거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첫 번째 서면 입장에서 모든 사실적 근거를 패널에게 제출한다.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이 규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13. 요청, 통보 또는 제10호나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패널절차 관련 문서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 문서의 사본을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14. 당사국은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패널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 있어서 사무적 성격의 경미한 오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 *심리*

15. 규칙 제2호에 따라 설치된 일정표는 양 당사국이 패널에게 사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1회의 심리를 규정한다.

16. 패널의 심리에서, 각 당사국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주장을 제출하는 기회를 갖는다. 제소 당사국은 입장을 우선 표명한다. 양 당사국에게 최종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며, 제소 당사국이 진술을 우선 제출한다.

17. 양 당사국은 패널 심리에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한 자국의 구두진술 및 답변 서면본을 패널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18. 심리는 제소 당사국 및 피소 당사국에게 사건을 제출할 동일한 시간이 부여 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널에 의하여 수행된다.

19. 패널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 회의로 심리를 개최한다.

### *정보의 이용가능성*

20. 규칙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각 당사국의 서면 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21. 개인 사생활 또는 특정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적인 비밀유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되는 특정 정보를 비밀유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제출한 정보를 비밀정보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대중에 공개될 수 있는 자국의 서면 입장에 포함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을 패널 및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23. 제20.11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국에게 제출된 최초 보고서 및 모든 의견은 비밀이다.

2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및 법정 서기(지정된 기록원)를 포함한 패널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개인이 패널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 *정보 수집*

25. 양 당사국은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에 대한 패널의 모든 요청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응답한다.

26.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제공 요청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패널은 각 당사국에 자신이 받는 모든 의견,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 *보고서*

27. 패널은 제20.11조제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여, 양 당사국에게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다.

28. 패널의 최초 및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패널 보고서에 표현된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이다.

#### *장소*

29. 패널 심리 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하며 첫 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 *보수 및 비용의 지불*

30. 패널은 기록을 유지하고 보조인, 지정된 기록원 또는 규칙 제7호에 따라 패널이 소유하는 그 밖의 개인에게 지불된 비용을 포함하여, 절차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일반 비용에 대한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

부속서 20-나의 첨부분서  
분쟁해결패널절차에 대한 모범 절차규칙

분쟁해결패널 시간표<sup>90</sup>

XX/XX/XXXX에 설치된 패널

가. 양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 접수

1) 제소 당사국: 14일

2) 피소 당사국: 21일

나. 양 당사국의 서면 반박 입장 접수: 10-25일

다. 양 당사국과의 최초 심리일: 20-45일

라. 양 당사국에 최초 보고서 제출: 60-90일

마.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의견제시 마감시한: 14일

바.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 제출: 31일

총 시간: 170-240일

---

<sup>90</sup> 추가 심리 및 입장제출을 위한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